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
(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구 미 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 (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민간대행사무의 계약기간(3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구미시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나. 추진근거

-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 4)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생폐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 5)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다. 대행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성상별(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구역별로 구분하여 업체 선정

- 1) 일반쓰레기 : 3개 업체
- 2)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 1개 업체
- 3) 음식물류 폐기물 : 2개 업체

마. 소요예산(44,826백만원)

- 일반쓰레기 : 24,357백만원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 7,728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 12,741백만원

※ 산출근거 : 2023년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름
(매년 8% 예상 상승률 반영)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일반폐기물	7,503	8,103	8,751	예 상 금 액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2,381	2,571	2,776	
음식물	3,924	4,239	4,578	

※ 산출기준

-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16.6.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
- 2)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바. 수집·운반 대행구역

- 일반폐기물

구 분	수집·운반 구역	비 고
1구역	원평, 지산, 도량, 선주원남, 광평, 고아(원호·문성지구)	
2구역	송정, 형곡1·2, 신평1·2, 비산, 공단, 상모사곡, 임오	
3구역	인동, 진미, 양포. 제1,2,3,4공단, 산동 4공단 확장단지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구 분	수집·운반 구역	비 고
4구역	인동, 진미, 양포	

- 음식물류 폐기물

구 분	수집·운반 구역	비 고
1구역	고아(원호·문성지구), 도량, 선주원남, 송정, 원평, 지산, 형곡1·2	
2구역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 상모사곡, 임오, 인동, 진미, 양포, 산동(4공단·확장단지)	

3. 붙임자료

가. 관계법령 1부.

나.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성과평가 결과 1부. 끝.

붙임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10.10, 2014.12.31, 2021.10.6.>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울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대행지정을 할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모(추첨)하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11.18, 2001.01.20, 2004.12.22, 2012.1.6)

② 대행지정을 받은 자의 수집·운반구역은 구미시행정구역으로 하되, 사업활동(제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6.11.18, 2004.12.22, 2012.1.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붙임 나. 성과평가 결과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성과평가 결과

-최종보고-

2022. 08

주식회사 지역정책조사연구원

1. 평가 종합 결과

가) 평가분야별 종합평가 결과

- 1) 평가분야별 종합평가 결과 분야별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2022년도 구미시의 전반적인 청소실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100점 환산점수를 통해 각 분야별로 비교·분석함
- 2) 2022년 평가분야별 종합평가 결과 주민만족도 평가점수 26.44점, 평가단 현장 평가 점수 39.23점, 실적서류평가 점수 27.27점으로 총점 92.94점으로 나타남
 - 주민만족도 평가점수는 총 배점 30점 기준 26.44점이며, 100점 환산 시 88.13점으로 나타남
 - 평가단 현장평가 점수는 총 배점 40점 기준 39.23점이며, 100점 환산 시 98.08점으로 나타남
 - 실적서류 평가 점수는 총 배점 30점 기준 27.27점이며, 100점 환산 시 90.90점으로 나타남
 - 분야별 100점 환산점수를 통해 비교할 경우 현장평가(98.08점) 점수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실적서류 평가(90.90점), 주민만족도 평가(88.13점) 순으로 나타남

[표 5-9] 2022년 평가분야별 종합평가 결과

(단위 : 점)

구분	배 점	평가점수	100점 환산점수
주민만족도 평가	30.00	26.44	88.13
평가단 현장평가	40.00	39.23	98.08
실적서류 평가	30.00	27.27	90.90
총 점	100.00	92.94	92.37

주1) 각 분야별 평가점수는 업체별 평균점수를 나타냄

주2) 100점 환산방식 : (평가점수/배점)×100

나) 대행업체별 종합평가 평가 결과 및 등급에 따른 적용

- 1) 2022년 업체별 종합평가 결과 및 등급 적용결과를 통해 분야별 점수와 등급을 알 수 있으며, 등급기준 및 활용방안을 통해 대행업체별로 우대를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2) 종합평가 결과 및 등급 적용결과 6개 업체 모두 “탁월” 등급으로 나타남
 - 미래환경은 주민만족도 평가 점수 25.03점, 평가단 현장평가 39.61점, 실적서류 평가 점수 27.27점으로 총점 91.85점을 얻어 “탁월” 등급으로 나타남
 - 구미환경산업은 주민만족도 평가 점수 25.72점, 평가단 현장평가 38.50점, 실적서류 평가 점수 26.40점으로 총점 90.62점을 얻어 “탁월” 등급으로 나타남
 - 공단환경은 주민만족도 평가 점수 27.28점, 평가단 현장평가 39.35점, 실적서류 평가 점수 27.00점으로 총점 93.63점을 얻어 “탁월” 등급으로 나타남
 - 늘푸른환경은 주민만족도 평가 점수 26.75점, 평가단 현장평가 39.87점, 실적서류 평가 점수 28.50점으로 총점 95.12점을 얻어 “탁월” 등급으로 나타남
 - 에코환경산업은 주민만족도 평가 점수 26.82점, 평가단 현장평가 38.63점, 실적서류 평가 점수 28.00점으로 총점 93.45점을 얻어 “탁월” 등급으로 나타남
 - 태흥환경개발은 주민만족도 평가 점수 27.02점, 평가단 현장평가 39.42점, 실적서류 평가 점수 26.50점으로 총점 92.94점을 얻어 “탁월” 등급으로 나타남

[표 5-10] 2022년 업체별 종합평가 결과 및 등급

(단위 : 점)

구분	미래환경	구미 환경산업	공단환경	늘푸른 환경	에코 환경산업	태흥 환경개발
총 점	91.85	90.62	93.63	95.12	93.45	92.94
등 급	탁월	탁월	탁월	탁월	탁월	탁월

[표 5-11] 등급기준 및 활용방안

등 급	평가점수	활 용(예)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탁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개선 조건부 입찰
부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영업정지

2. 제언

- 1) 구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모두 탁월 이상의 평가를 받았지만, 분야별로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함
- 2) 첫째, 주민만족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구미시민이 생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대행업체와 상관없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민만족도 조사의 경우 2022년 1회를 실시하였지만, 표본의 다양화와 특정 기간에 평가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연간 2회 실시하는 것을 제안함. 또한 청소 분야에 관심이 많고 구정활동에 적극적인 주민대표를 평가 표본의 10%로 선정하여 표본의 객관성을 확보함
- 3) 둘째, 평가단 현장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장평가는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채점하는 방식으로 되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 현재 평가자 교육을 진행중이나 평가자의 주관이 최대한 배제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평가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4) 셋째, 서류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민원처리 실적의 경우 민원 발생 건수로 평가하는 것 보다 민원 처리 결과와 대응 이후 민원인의 만족도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변별력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대행업체 민원 안전 중 가장 많은 민원을 보이는 음식물류 악취는 현재 격일수거로 진행되고 있어 민원 감소를 위해서는 매일 수거로 변경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5) 청소행정 및 서비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시민의식 강화를 통한 홍보를 위하여 청소행정 프로그램 실시 및 연령층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자발적인 청소행정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불법쓰레기 투기빈도가 높은 야간에 주기적인 야간집중단속 강화를 실시하거나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도입을 통한 단속이 병행된다면 쓰레기 분리수거와 깨끗한 환경조성 및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와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

6)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지침 검토

- 구미시는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진행하였음.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개정 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음
-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2021년 4월 기준으로 평가항목과 배점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2022년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 2021. 04.)」은 평가단 현장평가 시 적환장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두고 있으나 구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우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바탕으로 구미시 조례와 평가지침에 대한 검토와 개정을 함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소 관 부 서		자 원 순 환 과
입 안 자	과 장	장 재 일
	담 당	문 태 동, 전 동 희
	담 당 자	김 상 미, 김 학 휘 (480-5202, 5223)